

# 2026년 융복합지원사업 설비가격 및 지원단가

(단위: 천원/kW, 천원/m<sup>2</sup>, VAT제외)

에너지 지원	구분		설비가격 (육지)	설비가격 (도서)	지원단가 (육지)	지원단가 (도서)
태양광	주택 (2kW이하)	저탄소모듈	1,980	2,277	792	910
	주택 (2kW초과~3kW이하)	저탄소모듈	1,497	1,722	599	688
	공동주택 (~30kW/동)	저탄소모듈	1,292	1,486	517	594
	건물 일반 (100kW이하)	저탄소모듈	1,441	1,657	576	662
	축사, 축산시설 (100kW이하)	저탄소모듈	1,255	1,443	628	721
태양열	주택 (7m <sup>2</sup> 이하)	10.0(MJ/m <sup>2</sup> ·day)초과	1,289	1,482	709	815
		7.5MJ/m <sup>2</sup> ·day초과~10.0MJ/m <sup>2</sup> ·day이하	1,289	1,482	645	741
		7.5MJ/m <sup>2</sup> ·day이하	1,289	1,482	580	667
	주택 (7m <sup>2</sup> 초과~14m <sup>2</sup> )	10.0(MJ/m <sup>2</sup> ·day)초과	1,246	1,433	685	788
		7.5MJ/m <sup>2</sup> ·day초과~10.0MJ/m <sup>2</sup> ·day이하	1,246	1,433	623	716
		7.5MJ/m <sup>2</sup> ·day이하	1,246	1,433	561	644
	주택 (14초과~20m <sup>2</sup> )	10.0(MJ/m <sup>2</sup> ·day)초과	1,075	1,236	591	679
		7.5MJ/m <sup>2</sup> ·day초과~10.0MJ/m <sup>2</sup> ·day이하	1,075	1,236	538	618
		7.5MJ/m <sup>2</sup> ·day이하	1,075	1,236	484	556
	주택 (6m <sup>2</sup> /대)	자연순환식온수기	6,852	7,880	3,769	4,333
	건물 (1,500m <sup>2</sup> 이하)	10.0(MJ/m <sup>2</sup> ·day)초과	1,327	1,526	664	763
		7.5MJ/m <sup>2</sup> ·day초과~10.0MJ/m <sup>2</sup> ·day이하	1,327	1,526	597	686
		7.5MJ/m <sup>2</sup> ·day이하	1,327	1,526	531	610
	건물 (1,500m <sup>2</sup> 이하)	냉난방	1,946	2,238	876	1,007
	건물 (6m <sup>2</sup> /대)	자연순환식온수기	6,989	8,037	3,145	3,616
지열 (수직 밀폐형)	주택 (10.5kW이하)	-	1,611	1,853	806	926
	주택 (10.5~17.5kW)	-	1,377	1,584	689	791
	건물 (17.5kW이하)	-	1,377	1,584	689	791
	건물 (1,000kW이하)	-	1,381	1,588	691	794
연료 전지	주택 (1kW이하)	-	23,466	26,986	11,733	13,492
	건물 (10kW이하)	-	14,053	16,161	7,027	8,080

- ① '26년 융복합지원사업의 설비가격 및 지원단가는 부가세(VAT) 미포함 가격·단가로, 국고 보조금은 부가세를 제외하여 지원함
  - 전자민원서비스(BPM) 수요조사 신청 및 사업비 신청내역 등의 설비별 사업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관리·운영
  - 부가세(VAT)는 사업비 신청내역 작성 시 기타 항목(지방비/민간)으로 별도 구성
    - \*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함이 원칙
- ② 보조금은 설비 설치용량,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
  - “저탄소 모듈”은 「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(산업부고시)」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 $655\text{kg}\cdot\text{CO}_2\text{-eq/kW}$ 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함
  - 태양열 설비는 단위면적당 1일 집열량(인증서, 전면적 기준)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, 자연순환식 온수기의 경우  $6\text{m}^2/\text{대}$  기준으로 지원
  - 지열은 정미용량이 아닌 열펌프유닛의 용량을 기준으로 지원단가 적용
- ③ “도서지역” 지원단가는 “육지” 지원단가에서 15% 가산 후 적용된 단가임
- ④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비용량의 110%까지 설치 가능하며,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
- ⑤ 본 지원단가에서 명시되지 않은 설비(BIPV, 풍력, 소수력, 펠릿, 전력저장장치(ESS) 등)의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시 컨소시엄에서 단가를 사전조사 후 제시하여야 하며 인정여부는 공개평가위원회에서 결정
- ⑥ 축사 및 축산시설은 축산업 등록(허가)증을 득한 자가 축산업 등록(허가)증에 신고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
- ⑦ 본 보조금 지원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- ⑧ 본 단가는 2026년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며, 同사업에서 적용하는 하자보증기간 및 시공기준 등을 반영한 것으로 他사업(민간, 지자체 등)의 기준단가가 될 수 없음
  - 他사업에 본 단가를 적용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및 센터에서는 관련 없음